

심사결과보고

의안 번호	의안명	심사결과	비고
4572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4572
----------	------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22.

행정자치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7월 9일, 서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년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심사 일자: 제29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심사·의결(2026. 7. 2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1)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운영)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민간 위탁 운영되는 시설로 2026년 9월 30일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임
- 2)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선공원종합 체육관을 위탁 관리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의회동의)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2) 추진근거

-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필 요 성: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운영 활성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관리

4) 위탁사무의 내용: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5)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개관일	소재지	규모(㎡)	운영인력	주요시설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2002. 7. 2.	남선로 66 (탄방동)	12,123㎡	24명	빙상장,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등

6) 위탁기간: 2026. 10. 1. ~ 2028. 12. 31.(2년 3월)

7) 수탁기관의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법 제31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전일 대전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개인 사업자로 법인(단체) 정관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체육시설 사업 등이 포함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자

8) 수탁기관 선정: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9) 소요예산: 지원금 연 50,000,000원 (원가계산 용역 결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옥주)

- 본 동의안은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해지로 위탁기간이 2026년 9월 30일 만료 예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미리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심사결과: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남선공원종합체육관 -

민 간 위 탁 (재 위 탁) 동 의 안

의안 번호	4572
----------	------

제출년월일: 2026. 7. 9.

제 출 자: 서 구 청 장

1. 제 안 이 유

가.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운영)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되는 시설로 2026년 9월 30일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임

나.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을 위탁 관리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위탁사무명: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나. 추진근거

-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다. 필 요 성: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운영 활성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관리

라. 위탁사무의 내용: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마.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개관일	소재지	규모(㎡)	운영인력	주요시설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2002. 7. 2.	남선로 66 (탄방동)	12,123㎡	24명	빙상장,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등

바. 위탁기간: 2026. 10. 1. ~ 2028. 12. 31.(2년 3월)

사. 수탁기관의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법 제31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전일 대전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개인 사업자로 법인(단체) 정관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체육시설 사업 등이 포함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아. 수탁기관 선정: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자. 소요예산: 지원금 연 50,000,000원 (원가계산 용역 결과)

3. 참고사항

가.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해지로 인한 운영종료(2026. 9. 30.) 예정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 추진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운영)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 제6조(의회 동의),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9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II 필요성

-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한 체육·문화 공간으로,
-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운영 활성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향후에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함

III 위탁 개요

○ (대상시설)

시 설 명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소 재 지	남선로66(탄방동)	개 관 일	2002. 7. 2.
시설면적	연면적 12,123㎡	운영인력	24명
現 수탁기관	주식회사 겨울	지원금	연 50,000천원
주요시설	빙상장,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등		
위탁사유(선정방법)	위수탁 계약해지에 따른 재위탁(공개모집)		
재위탁기간 (現 위탁기간)	2026. 10. 1. ~ 2028. 12. 31.(2년 3월) (2025. 6. 15. ~ 2026. 9. 30.)		

○ (위탁사무)

- 대상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 시설, 장비, 비품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운영 개선을 통한 주민 만족도 증대
- 시설 사용허가, 질서제도, 청결 유지 등

IV 세부 추진계획

1 수탁기관 선정 방법

- (선정방법)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른 공개모집
- (공고기간) 2026년 7월 말 ~ 8월 초 예정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공고

2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 및 심의) 2026년 8월 예정(10인 이내 구성)
- (위원장)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역 할)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의
- (임 기) 수탁기관선정 심의 후 즉시 해산
- (위원위촉)
 -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 대전광역시 서구의원(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제외) / 의회 추천
 - 민간위탁 대상 사무와 관련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 그 밖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심사방법)
 - 신청업체 제안서 검토,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후 일괄 평가
 - 평가표에 따른 절대평가로 적격 여부 판단

3 심사기준

- 규모, 인력, 장비 등 업무 운영 능력
-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 비용 절감 능력
- 책임능력과 공신력
-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사업운영의 투명성

4 수탁기관 선정 및 통지

- 심사결과는 투명성,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공개 내역과 범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배점기준표에 의한 절대평가 및 배점부여
- 심의결과 수탁기관 선정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5 위·수탁 계약 체결

- 체결시기: 2026년 9월 예정
- 체결내용: 대상시설(남선공원종합체육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V 향후 추진계획

- 의회 민간위탁 관리 재위탁 동의안 제출: 2026. 7. / 제297회(임시회)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2026. 8.
- 위·수탁 계약 체결: 2026. 9.

- 붙임 1. 위탁시설 현황 1부.
2. 관련 법령 1부.
3.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부. 끝.

붙임 1 위탁시설 현황

□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소재지	남선로 66(탄방동)	연면적	12,123㎡
개관일	2002. 7. 2.	운영방법	민간위탁
사업기간	1997. 12 ~ 2002. 6.	사업비	21,522백만원
시설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	빙상장,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 등
수탁기관	주식회사 겨울	선정방법	심사선정
위탁기간	2025. 6. 15.~2026. 9. 30.	대표자	이은주
운영인력	24명	지원금	연 50,000천원



붙임 2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운영)

-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체육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법인, 단체, 개인 및 지방공기업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따른다.
- 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

-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그 장을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6조(의회 동의)

-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보조 받는 사무로서 그로부터 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로부터 사업비 보조를 받는 사무로서 수탁기관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4.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5.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6. 재난·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사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소요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위탁시설 또는 그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시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 수준
 2. 수탁기관의 재정 부담 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대전광역시 서구(이하“구”라고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2. 제11조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1. 구 소속 공무원
 - 2.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위탁사무의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은 제외)
 - 3. 위탁사무와 관련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 4. 그 밖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수탁대상기관에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및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탁사무와 관련된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